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8월 26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



1. 제안이유

현행 조례는 비용추계서 작성 면제 기준을 연평균 3억 원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총 7억 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.

이에 그 기준을 연평균 1억 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1년 이하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여, 조례안에 따른 재정 부담을 보다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비용추계서 생략 가능 기준을 연평균 1억 원 미만 또는 총 3억 원 미만의
한시적(사업기간 1년 이하) 경비로 조정함(안 제12조제2항제1호).

나.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
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
- 전화 : 02)3396-8166 팩스 : 02)3396-9055

- E-mail : moonsun1004@junggu.seoul.kr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」”을 각각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장(이하 “주관과장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주관과장은 입법예고”를 “입법예고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자치법규안 주관과장은”을 “입법예고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보·신문·방송”을 “관보, 신문, 방송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구 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”로, “발의”를 “제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“3억원”을 “1억

원”으로, “7억원”을 “3억원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, 예산편성운영기준에”를 “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,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”으로, “발의당시”를 “의안 제출·발의 당시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제12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제12조제1항”으로, “부의”를 “제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발의하는”을 “제출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”을 “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공포하여야 한다”를 “공포한다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5조제2항”을 “의견제출인(제24조제2항”으로, “의견제출한”을 “의견을 제출한”으로, “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”를 “말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경우”로, “분명히 밝혀”를 “명확히 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“세출”이란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출, 「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.</p> <p>6.“세입”이란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입, 「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.</p> <p>7. (생략)</p> <p>제6조(입법예고 등)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입법예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다. 다만,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자치법규안 주관부서의 장 (이하 “주관과장”이라 한다)은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예고방법) ① 자치법규안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·신문·방송 또는 게시판에

----- . ---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-----

----- .

② ----- 장
은 -----

----- .

③ 입법예고 -----

----- .

제8조(예고방법) ① 입법예고는 -----

----- .

② -----

- 관보, 신문, 방송 -----

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구의회의 의결사항(이하 “의안”이라 한다)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(이하 “비용추계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. 다만, “한시적”이란 사업기간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)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-- 제출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.

1. ----- 1
억원 -----
----- 3억원 -----
-----.

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.

2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3조(비용추계서 작성 방법) ① ~ ⑤ (생략)

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되,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.

제14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)

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른 조례·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2조제2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공포방법)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비용추계서 작성 방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,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이 -- 의안 제출·발의 당시---.

제14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)

① 제12조제1항-----

----- 제출 -----

제출하는 -----
-----.

② 제12조제2항 -----

-----.

제17조(공포방법) -----
----- 공포한다.

다.

제25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25조(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) ① -----

의견제출인(제24조제2항-----
----- 의견을 제
출한 ----- 말한
다)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경우 -

----- 명확히 하여
-----.